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79

발의연월일: 2022. 6. 21.

발 의 자:임이자·권명호·김승수

김형동 • 박대수 • 송석준

신원식 • 정점식 • 주호영

하영제 · 한무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환의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전환은 필수불가결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 안과 일자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함.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중에 있

으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를 일자리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이에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이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전환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계

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기 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8조).
-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굴기업에 대한 고용 안정, 직무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 조).
- 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 고용

개선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 카.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 회계,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 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소멸

하고, 다른 산업 ·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이하 "고용안정 지원 등"이라고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정책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 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제8조의 기 본계획을 포함하여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지원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생기는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업 내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 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 대화) 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②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의 필요성이 특히 크다고 지정된 산업·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9조에 의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 2.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 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원활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등 지원

- 제9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이 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 다.
 -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 2.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 3. 산업전환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 피해 규모 등 에 관한 분석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 제10조(고용안정 지원 등 시책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한 산업・업종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기업 발굴·컨설팅)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변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 정, 직무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등이 필요한 기업(제15조에 따라 발굴한 기업을 포함한다) 및 근로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 8. 근로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9.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지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이 필요한 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산업·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방안 컨설팅

- 3.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등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 · 신청 지원
- 4.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등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 정지원
- 5.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 제16조(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시고용안정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일반회계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 제17조(보고·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